

<p>교육부</p>	<h1>보도자료</h1> <p>2020. 6. 15.(월) 배포</p>	<p>힘내라 대한민국</p>
------------	---	-----------------

「폐교재산 활용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」 개정 국무회의 통과

◆ 코로나19 등 재난 시, 폐교재산을 공적 용도로 대부한 자들에 대한 추가적인 대부료 감경 규정 마련

- 교육부(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)는 6월 16일(화)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「폐교재산 활용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」이 심의·의결되었다고 밝혔다.
 -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공적 용도*로 활용되는 폐교재산의 이용도가 급격히 저하되어 대부자들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시도교육청 등을 중심으로 제기되었다.
 - * 교육, 사회복지, 문화체육, 귀농어귀촌지원시설, 농어촌 소득증대시설
 - 이에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코로나19 등의 재난으로 인해 경제적 피해를 입은 경우 폐교재산을 공적 용도로 대부한 자들에게 대부료 감액 등을 통해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.
- 이번 시행령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.
 - 공적 용도로 폐교재산을 대부한 자들에게 코로나19 등 재난 시에는 한시적으로 △기존 연간대부료 감액가능비율을 추가적으로 확대하고, △조례 개정 대신 시도교육청별 공유재산심의회를 통해 대부료를 감액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하였다.

< 폐교재산 활용 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개선사항 >

폐교활용법에 따른 감액특례	현행	개선	
절차 개선	- 조례에 규정 (변경 시 조례 개정 필요)	- 조례 개정이 아닌 '공유 재산심의회'를 통해 감액 가능	
감액 비율	교육·사회복지·문화체육·귀농어·귀촌시설로 대부하는 경우	- 연간 대부료의 50% 까지 감액 가능	- (추가) 재난 시 한시적으로 연간 대부료의 80% 까지 감액 가능
	소득증대시설*로 대부하는 경우 *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영농시설 및 농어촌관광 시설 등	- 지역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 등에 한하여 연간 대부료의 30% 까지 감액 가능	- (추가) 재난 시 한시적으로 연간 대부료의 50% 까지 감액 가능

- 오석환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장은 “이번 개정으로 폐교재산을 공적으로 활용하는 대부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줄여주어 민생 안정을 지원하고, 재난 이후에도 폐교재산을 지속해서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시도교육청의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.”라고 밝혔다.

【붙임】 폐교재산 활용 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신·구조문 대비표

